

보도시점

배포시

배포

2025. 2. 4.(화)

## 정부는 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 제도를 합리적으로 지속 정비할 예정입니다.

## 〈보도내용〉

- □ 2025.2.4. 연합뉴스 「연금계좌 해외주식ETF 배당 이중과세 논란…정부 대책 논의」, 한국경제 「매달 꽂히는 돈 쏠쏠했는데…140조 해외투자 펀드 날벼락」기사에서,
  - 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는 분배금부터 이중과세 피해를 보는 투자자가 발생하고, 뒤늦게 문제를 인지한 기재부는 금융투자협회와 퇴직연금 사업자 등과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.

## <기획재정부 입장>

- □ 정부는 간접투자회사 등을 통해 해외 금융상품 등에 간접투자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을 종전 2단계 납부방식(국세청 선환급→ 후원천징수) 에서 투자자에게 소득 지급 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합리화 하였습니다.('22년 도입, '25년 시행)
  - 특히, 종전 방식의 경우 국외원천소득의 국내과세여부와 무관하게 국세청이 외국납부세액을 선환급함에 따라 국고로 외국납부세액을 지원하는 사례가 발생\*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.
    - \* (사례1) 면세 국내법인의 경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국내 과세가 없으나, 외국납부세액을 지원 (사례2)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 내 펀드를 통해 해외투자하는 경우 국세청은 펀드에게 외국 납부세액(14% 한도)을 선환급하고,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투자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배당소득에 대해 9%만 원천징수되어 결국 5%를 국세청이 보전하는 결과
      - (사례3)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국세청이 펀드에게 외국납부세액 선환급 후 실제 연금수령이 수십 년간 지연됨에 따라 선환급세액에 대한 기간 이자이익이 발생하고, 연금 수령시 배당소득에 대해 3~5%만 원천징수되어 결국 9~11%를 국세청이 보전하는 결과

- □ 다만,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(비과세 및 9% 분리과세) 및 연금계좌(3~5% 저율분리과세) 과세특례 계좌에 간접투자상품을 편입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'24.9월 금융투자협회 등 금융업계의 건의를 바탕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.
  - 이에 따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경우 금년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별도의 적용 기준을 마련\*하였고, 연금계좌에 대해서는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제도 개편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.
    - \* ('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, '25.1.16.)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별 소득합산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기준 마련

담당 부서	세제실	책임자	과 장	공 석
	국제조세제도과	담당자	사무관	박해용 (pplong@korea.kr)





